

이용료

- ① 수급자자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등급		' 23년 수가	' 23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2등급	35,760	5,364
	3등급	33,010	4,952
	4등급	31,510	4,727
	5등급	30,000	4,50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6시간 이상	2등급	47,960	7,194
	3등급	44,270	6,641
	4등급	42,770	6,416
	5등급	41,240	6,186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8시간 이상	2등급	59,660	8,949
	3등급	55,080	8,262
	4등급	53,580	8,037
	5등급	52,050	7,808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0시간 이상	2등급	65,720	9,858
	3등급	60,720	9,108
	4등급	59,190	8,879
	5등급	57,690	8,654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12시간 이상	2등급	70,480	10,572
	3등급	65,110	9,767
	4등급	63,600	9,540
	5등급	62,100	9,315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비급여 추가		
식사재료비	3,500원	1식 기준
간식비	1,000원	1일 간식(오전,오후)
이미용비	0원	0원

*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 비용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